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범우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3. 제안이유

- 현행 청남대 입장료 현실화 필요성을 반영하고 입장료 할인 범위 확대 및 중복 할인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청남대 입장요금 조정(안 별표1)
 - 현행 어른 주간 5,000원, 단체/야간 4,000원 → 6,000원, 5,000원
- 입장료 할인 범위 확대 (안 제4조)
 - 기관 단체 및 사업체의 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확인서 등)을 소지한 개인·단체가 다음 날까지 입장할 때 → (생략) 행사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입장하는 경우
 -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청남대 입장요금 현실화를 위해 기존 어른 입장 요금을 1,000원 인상(주간 5,000원→6,000원, 야간/단체 4,000원→5,000원)하는 것과
- 입장요금 할인의 경우 행사 종료 후 다음 날까지 청남대에 입장하는 경우에서 행사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입장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것임.
- 매년 물가가 인상되는 점과 한번 책정한 입장요금을 재차 인상하는 것은 부담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입장요금 인상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국에 입장요금 인상으로 운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지는 의문임. 또한 조례로 입장요금을 정하는 것은 도민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음에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할인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관련법령 발췌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20. 6. 9.>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